

담양군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6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편의 제공을 통해 예우를 표하고 주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, 2조)
- 나.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6. 10 ~ 6. 15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담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국가유공자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
나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

2. “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(이하 ‘우선주차구역’이라 한다)”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담양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
2. 담양군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)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,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)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8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 권고) 군수는 병원,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(안) (제5조 관련)

1. 규격 및 색상

가. 규 격: 바닥면 가로 2,500mm × 세로 5,000mm,

표지판 가로 600mm × 세로 700mm

나. 색 상: 남색(바탕색), 흰색(글자)

2. 도안 (국가보훈부 ‘국가유공자 상징’ 심볼 삽입)

가. 바닥면 도안



나. 안내표지판 도안

